

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의2 및 제4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9조의2(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서) 영 제15조의4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32호의2서식과 같다.

제45조의2(전자민원창구의 설치·운영 등) ① 법 제40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종축등록기관이 발행한 혈통증명서의 열람 및 발급
2. 제38조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 결과의 열람 및 발급
3. 제38조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 및 제39조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제외대상확인신청서의 제출
4. 제45조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(재발급과 추가발급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와 제39조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제외대상 확인서의 열람 및 발급
5. 「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정보의 열람

6. 「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 제7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확인서의 열람 및 발급
 7. 「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3조에 따른 도축검사증명서의 열람 및 발급
 8. 「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3조에 따른 인증서의 열람 및 발급
 9. 「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」 제19조에 따른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의 열람 및 발급
 10. 그 밖에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증서와 증명서 등의 열람 및 발급
- ②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축과 축산물 관련 서류 등을 통합하여 열람하도록 하거나 통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.
- ③ 그 밖에 전자민원창구의 설치 및 운영 방법과 정보시스템의 연계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- 별지 제3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과징금 []납부기한 연장
[]분할 납부 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하고,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 10 일
------	------	-----------

신청인	성명(한글) (한자)
	주소 (전화번호:)

과징금 부과명세	납부통지서 발행번호
	과징금 부과금액
	납부기한

신청사유
신청내용

「축산법」 제2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제2항에 따라
과징금([]납부기한 연장 []분할 납부)을(를)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신청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	수수료 없음
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

처리절차				
------	--	--	--	--

신청서	➔	접수	➔	확인	➔	결재	➔	통보
신청인		시·군·구청장		시·군·구청장		시·군·구청장		시·군·구청장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<u><신 설></u>		<u>제29조의2(과징금의 납부기한 연</u> <u>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서) 영</u> <u>제15조의4제2항에 따른 과징금</u> <u>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</u> <u>부 신청서는 별지 제32호의2서</u> <u>식과 같다.</u>		
<u><신 설></u>		<u>제45조의2(전자민원창구의 설치</u> <u>· 운영 등) ① 법 제40조의2제3</u> <u>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해</u> <u>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</u> <u>각 호와 같다.</u> <u>1. 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종축</u> <u>등록기관이 발행한 혈통증명</u> <u>서의 열람 및 발급</u> <u>2. 제38조에 따른 축산물등급판</u> <u>정 결과의 열람 및 발급</u> <u>3. 제38조에 따른 축산물등급판</u> <u>정신청서 및 제39조에 따른</u> <u>축산물등급판정제외대상확인</u> <u>신청서의 제출</u> <u>4. 제45조에 따른 축산물등급판</u> <u>정확인서(재발급과 추가발급</u> <u>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와 제</u> <u>39조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</u>		

제외대상 확인서의 열람 및 발급

5. 「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
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에 따
른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정보
의 열람

6. 「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
칙」 제7조의2에 따른 안전관
리인증기준 적용 확인서의 열
람 및 발급

7. 「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
칙」 제13조에 따른 도축검사
증명서의 열람 및 발급

8. 「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
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
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
시행규칙」 제13조에 따른 인
증서의 열람 및 발급

9. 「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
칙」 제19조에 따른 결핵병
및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의
열람 및 발급

10. 그 밖에 전자민원창구를 통
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
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증서와
증명서 등의 열람 및 발급

②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축과 축산물 관련 서류 등을 통합하여 열람하도록 하거나 통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.

③ 그 밖에 전자민원창구의 설치 및 운영 방법과 정보시스템의 연계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